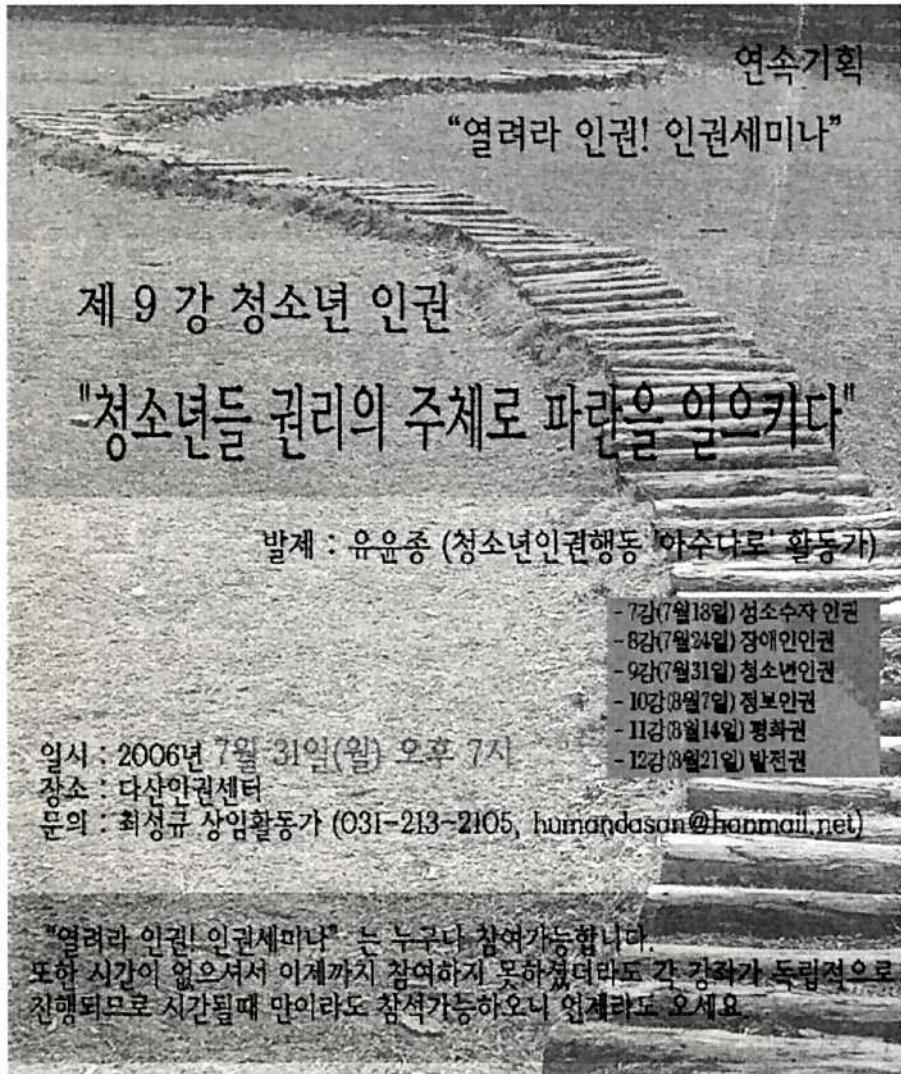


연속기획



열려라 인권! 인권 세미나

- 제 9 강 청소년 인권 -

청소년들. 권리의 주체로 파란을 일으키다!

발제자 : 유윤종 (청소년인권행동 활동가)

일시 : 2006년 7월 31일 늦은 7시

장소 : 다산인권센터 회의실

청소년들, 권리의 주체로 파란을 준비하다

청소년인권 개괄

흔히 “유엔아동권리조약”을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곧 우리가 청소년인권이라 부르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동의 권리, 곧 미성년자의 권리와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국제적으로 ‘아동’ 개념이 형성된 것을 살펴보면, 이 ‘아동’이 독자적인 존재로 따로 취급받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입니다. 자본주의 초기의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저연령 노동자의 높은 사망률 등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모두에게 아동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공교육 도입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중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질 것을 주장해왔고, 근대국가와 자본가는 체제유지를 위해서 재생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교육’ 체계가 도입되었고 아동이 성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세계와 행동양식,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존재라는 관념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동은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받아야 할 객체로 인식되었습니다. 1924년 국제연맹의 ‘제네바선언’은 아동을 보호·구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당시 관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959년에는 ‘아동의 권리선언’이 UN 총회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는데, 이 선언은 제네바선언을 심화 발전시킨 성격이 강하지만 전문에서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강조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입법을 비롯한 조치를 정부가 취할 것을 요청한 점 등에서 아동이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한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발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을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있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언에 나타났던 사회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책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은 모두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속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와서야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이 분명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자 미성숙한 존재로 간주되어왔기에, 아동이 교육, 의료 등 보호나 복지권을 주장하려면 단지 그들의 요구나 필요가 무엇인가를 밝히면 되지만 자유권이나 참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밝혀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것은 그런 능력을 증명하는 길 중 하나.) 현재 아동인권(청소년인권)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보호나 복지권적 접근을 고집하는 보호주의/부권주의적 입장도, 이를 전면 부정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결정과 자유를 강조하는 해방론적 입장도 아닌 그 둘을 절충한 조정적 자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을 함께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율적인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은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양육과 보호를 ‘요구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라는 것은 청소년이 사회와 국가에 이를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는 요구를 수용할 책임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특히 아동을 미래의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편이며 국가주의·군사주의·유교문화 등으로 미성년자를 권리의 주체라기보다는 훈육하고 지도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지만 사회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이해하는 협약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부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일상적이며, 교육 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도 여러 차별이 만연해 있습니다. 1996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학교규율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합치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협약 제28조에 관심을 기울일 것, 체벌 문제나 임시경쟁 문제 해결 등을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아동의 인권 부문에서 초기부터 인정된 교육받을 권리나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을 위해 물질적·정신적 수단을 제공받을 권리

청소년인권운동 권리의 주체, 변혁의 주체

청소년인권운동의 시발점으로는 일반적으로 1995년 최우주 씨 헌법소원 사건을 듭니다. 1995년 7월, 춘천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어던 최우주 씨는 ‘학교가 학생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교육부, 강원도교육청 등에 제출한 민원을 전문을 하이텔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는 본래 헌법소원을 내려다 절차상의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있다는 최우주 씨의 문제의식은 실로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이텔 게시판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최우주 군의 학교 문제, 함께 따라가 봅시다”라는 제목의 토론방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김한울 씨는 “헌법소원은 단순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학생도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 행위였다.”라고 평가했고, 이 토론방의 논의는 나중에 ‘학생인권회복회’라는 온라인단체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학생인권회복회’가 “학생인권선언서”(1998)를 발표하고 체벌법제화 반대운동 등을 한 ‘중고등학생복지회’의 전신이었으며, 인권의 관점에서 청소년문제와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운동의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운동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80년대의 청소년운동(중고등학생운동)에서는 현재 청소년인권이 외치고 있는 “학생회 직선제” “두발자유화”나 “강제 보충수업, 자율학습 철폐”, “입시경쟁교육 척결” 등이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것은 청소년들이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보다는 민주화운동에서 교육을 민주화시키고 군사주의를 없애자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주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인권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민주화운동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더 많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 했다기보다는 사회 변혁의 주체로써 인식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들 자신의 인권을 찾는 것인 동시에 사회 변혁의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들을 확고히 위치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interven

청소년인권운동의 방법론에 대해

최우주 씨와 중고등학생복지회의 활동 이후에는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웹연대 with의 두발자유화 운동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두발자유 문제가 청소년인권에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강의석 씨의 종교자유운동, NEIS 반대 운동, 강제 자율학습 관련 운동 등 여러 가지 청소년인권의 이슈들이 운동을 통해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은 청소년인권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하게 합니다. 특히 온라인 오프라인과 소수운동과 대중운동의 방법론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복지회에서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이 갈라져 나올 때부터 논의된 부분입니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청소년의 대중적 조직을 지향해야 한다며 중고등학생복지회에서 갈려져 나왔습니다.)

진보적 청소년인권운동이 수단적으로 대중운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현재 사회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체제를 바꾸려면, 다수의 연대와 저항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전형적으로 수적으로는 소수가 아니지만 권력 관계상 소수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서로 연대하고 집단을 이루어 권리의 평형을 맞추려 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일터로 집중되듯이 ‘학교’라는 공간으로 다수가 집중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청소년 운동이 방법론에서 노동운동의 방법론과 유사한 부분을 상당수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유사점 때문) 또한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의 태반이 학교를 비롯하여 교육과 관련되어서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인권운동은 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학내의 대중적 조직을 건설하여 지속시켜야 합니다.(소모임활동, 혹은 지회전) 탈학교청소년의

경우도 일터나 다른 공간에서의 조직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이를 감시하고 이에 대처할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파란을 준비하며

2000년과 2005년,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주장하며 일어섰을 때 사회에는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청소년의 인권 상황은 열악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은 지금 더욱 큰 사회적 파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권리의 주체로 선언함과 동시에, 그를 통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내는 존재로 자신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청소년인권운동은 여러 인프라 면에서 따져보면 이제 막 시작하는 걸음마 운동입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서 조직이 흔들리는 등의 청소년운동 특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재학 중일 때 아래 학년과 잘 접촉해서 조직에 끌어들이라는 것 외에는) 획기적인 답이 제시되지도 못하고 있으며, 대중조직 건설도 밀바닥에서부터 해나가는 길고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긴 작업과 시행착오의 역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떠한 운동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여러 사회운동들도 그런 시행착오의 역사를 겪으면서 발전해왔음을 주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운동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